

1.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동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·면에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
- 그 동안 복지회관의 멸실과 신설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복지회관의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별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제2조의 명칭 및 소재지란 중 '96년도 웅담~오현간 (지방도 350번 도로) 도로 화·포장공사로 편입되어 멸실된 파주시 법원읍 종합 복지회관 란을 삭제하고, 올해 준공된 파주시 어유지리 종합복지 회관을 추가로 삽입 (안 제2조)
- 별표 사용료의 목욕탕 사용료중 소인은 600원에서 1,800원, 대인은 1,200원에서 2,500원, 이발료중 학생은 3,000원에서 5,000원, 일반은 4,000원에서 8,000원, 미용실중 드라이와 컷트는 각 3,000원에서 7,000원, 파마는 12,000원에서 15,000원, 다중집회사용료(예식장)는 10,000원에서 30,000원으로 각각 인상

□ 검토내용

- 동 조례에 의한 파주시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관리는 법원읍 웅담리와 탄현면 축현리, 교하면 교하리, 파평면 금파리, 적성면 마지리등 총 5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나

- 지난 '96년도에 응답~오현간 도로 확·포장공사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법원읍 종합복지회관이 멸실된 상태이고 올해 적성면 어유지리 종합복지회관이 신설되어 동 조례의 관리대상에서 삭제·포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며
- 별표의 복지회관 사용료에서 독서실 사용료를 제외한 목욕탕, 이·미용실과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다중집회장소등의 사용료를 적게는 25%에서 많게는 200%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일시적인 과다 인상은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반발이 예상되고 지역물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과
- '92년도 이후 사용료를 한번도 인상치 않았고 시중 일반업소와 비교하여 대부분 저렴한 행정지도 가격이하로 책정된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금번 사용료 인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.